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43
----------	------

2025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김재진 의원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한강공원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강 내 이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 서울시 타 조례와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안 제14조 2항 및 4항).
-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실시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의 발굴·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이 폐기물 감량과 분리 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시민의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권고¹⁾를 토대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번 회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이 발의되었는데 한강공원이 도시공원의 범주에 포함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한강공원 이용 시민과 관광객 수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순환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리워드(보상) 기반의 자원순환 챌린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 안 제21조의2제3항은 폐기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다만, 인센티브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²⁾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비금전적 혜택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공연,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재능을 나누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조문에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하며, 인용 법령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43
----------	------------

제안년월일: 2025년 9월 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공연,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재능을 나누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조문에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하며, 인용 법령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골자

- 관련 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인용함(안 제14조제2항 제3호, 제4호, 제8호).
- 기존 감면 대상자의 표현을 개선함(안 제14조제2항제10호).
- 용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함(안 제14조제2항제10호, 제15호, 제16호).
- 재능 기부 또는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제2항제18호 신설).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2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
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 중 “경우, 이때 참여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한다.”를
각각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8.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이용료) ① (생략)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 -.	②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1. <u>한강</u> ----- ---- <u>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u> -----	1. (개정안과 같음)
2. <u>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u>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2. ----- ----- ----- ----- <u>1명</u>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3. (생략) 4. <u>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u> 5. <u>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u>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7. (현행 제3호와 같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7. (개정안과 같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개정안과 같음)
〈신설〉	6. ~ 7. (생략)	6. ~ 7. (개정안과 같음)
〈신설〉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9. (생략)	9.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10.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분증 제시한 경우	10. ----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
〈신설〉	11. ~ 14. (생략)	11. ~ 14. (개정안과 같음)
〈신설〉	15.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 이때 참여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한다.	15. ----- ----- ----- ----- ----- -----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신설〉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 이때 참여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한다.	16. ----- ----- ----- ----- ----- ----- 경우 (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③ ~ ⑦ (생략)	<u>18.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u>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을 “한강”으로, “관련된”을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을 “시범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5.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폐기물 감축 및 분리수거 홍보 등) ① 시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이용료) ① (생략)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1. 한강-----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신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3. (생략)	17. (현행 제3호와 같음)
4. 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생략)	18. (현행 제5호와 같음)
〈신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신 설〉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 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
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신 설〉

15.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
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
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
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범적-----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폐기물 감축 및 분리수
거 홍보 등) ① 시장은 한강공원
을 이용하는 시민이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